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PLP, PLD) 제조물책임법

〈 사례 〉

PL법 시행을 계기로 클레임 건수가 증가하면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쟁 처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현대의 대량생산 시스템 아래서, 한번 심각한 PL사건이 발생한다면,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배상청구가 초래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PL 사고는 기업의 경영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그런 사고의 예방과 분쟁처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 PL대책은 PL사고 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과 PL사고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PLD)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설계면에서의 안전성 고려 품질관리의 철저, 사용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 라벨·취급설명서의 충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PLD 대책은 문서작성·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대책의 필요성

제품안전 취급에 있어서 ① 부품이나 원재로는 최종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PL과 관계없다 ②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③ 안전기준,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품과 원재료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는 한, PL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품·원재료 메이커도 납품처의 지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공급하는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부품·원재료 제조자도 피해자의 클레임과 납품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PL 대책의 관점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품질관리가 PL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안전성 레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경고 라벨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품질관리와는 다른 문제이고,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때문이다. 모든 제품은 행정상의 안전기준과 규칙을 만족하도록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행정상의 기준, 규칙은 제품이 충족해야만 하는 최저 기준이고, 이것들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다양한 안전기준, 규칙을 만족한 뒤에 다시 한번 제품 안전성을 높여 가는 자주적 노력이 요구된다.